

변호사의 직무분쟁과 해결

제1장 직무분쟁의 원인과 변호사 과오 ◆ 332

제2장 직무분쟁의 해결 ◆ 340

제3장 변호사직무보험 ◆ 348

제1장 직무분쟁의 원인과 변호사 과오

제1절 의뢰인에 대한 대응방법

1.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릴 때는 어떤 심정일까. 그는 법률사무소에 오기 전까지 이해 상대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대화도 해 보았을 것이고,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왔을 것이다. 이때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이미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고 분노에 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보다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상대방을 제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의뢰인이 쉽게 변호사를 찾겠다고 결정한 경우는 드물 것이다. 여러 차례 심사숙고한 끝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할 경우에도 의뢰인은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줄 것인지,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잘 구성해 줄 것인지, 승산은 있는 것인지,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들것인지,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등에 대해 수많은 숙고를 할 것이다.

2. 의뢰인과 변호사의 신뢰관계

환자는 길을 가다가 병원을 찾을 수 있지만,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만

나서 사건 종결로 헤어질 때까지 신뢰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해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신뢰를 주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신을 주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나라와 같은 사법불신의 풍토에서 변호사도 언제든지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것은 결국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변호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단지 법률지식 상인(商人)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전문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일인(一人)의 비리행위는 변호사 전체를 욕되게 하는 특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과거 법조비리사건 특히 1997년 10월 발생한 ‘의정부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 경험한 바 있다.

그리하여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야 한다.

3. 변호사의 대응

가. 듣 기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할 때의 불안감으로 가득 찬 의뢰인을 만난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 때로는 인생 상담자처럼 의뢰인의 기분을 풀어 주어야 한다. 의뢰인에게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사건해결에 착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뢰인의 말을 듣는 중에도 의뢰인의 말을 중도

에 제지하거나 기분을 거스르게 하거나 표현의 서투름을 비난하거나 혼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이 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흔히 ‘사무장’이라는 법률사무소 직원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사무장이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므로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주는 인상 또한 중요하다. 어떤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법률상담과 사건수임까지 맡기고 자신은 법정에만 드나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것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위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여야 의뢰인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게 되고 법적 문제점도 더욱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

나. 말하기

흔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기 쉽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법률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쉬운 말로 대화하고 설명해야 한다(물론 전문가에게 전문 분야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전문 지식을 알리기 위해 또한 대화의 편의를 위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을 것이다). 법률용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특정 전문 용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고, 때로는 문헌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사하여 교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신의 지위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 외국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비속어나 통속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의뢰인에게 정중하게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후일 설명해 준 용어를 의뢰인이 잘못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최대 관심은 승패에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편잔을 주거나 열의가 없다는 등으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제2절 변호사 과오

1. 책임소송의 증가

최근 우리 나라에도 변호사의 업무상의 과오를 추궁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의사가 의료과오 소송을 당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추세이다. 과거에는 법률지식이 전문 지식에 속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법률문화의 발달과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양으로 변호사 업무도 예외 없이 직무수행에 있어 실수가 있으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대가 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이 판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변호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과오를 추궁당한다는 것은 분쟁해결의 전장(戰場)에서의 동반자 관계가 적대 관계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 사건수임의 관계이다.

2. 책임의 원인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왜 의뢰인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는 '위임'(委任) 관계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민법 제681조)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약으로 맺어진 끈은 긴장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어느 순간 끊어질지 모르니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점에서(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의 직무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책임을 논할 때에는 의뢰인과의 개별적인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책임뿐만 아니라 공익적 책임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변호사의 공익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3. 변호사 과오의 유형

그러면 변호사는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가. 어떤 경우를 변호사 과오로 보아야 하는가. 변호사 과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어떤가. 이런 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가. 불변기간의 도과(제소기간 및 상소기간 도과)

행정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도과시키게 되면 조세를 부과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손해 배상청구권과 같이 소멸시효가 있는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다투다가 패소할 경우 다른 청구원인으로 소를 다시 제기할 경우 이미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채무자 회사에 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별도의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도 있다. 또한 당사자를 잘못 선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에서 당사자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이 소를 제기하게 될 경우가 있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중에 별도의 소를 제기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소기간 도과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한 것에 일단 안심하고 있다가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놓쳐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사무직원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라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여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실수에 의한 항소기간 도과로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은 손해액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⁴⁹⁾

이러한 불변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메모를 해두어야 하고, 기간 마지막 날 제출하는 것보다는 며칠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을 습관화해 둘 필요가 있다. 불변기간을 놓쳐 본 변호사라면 불변기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해 보았을 것이다.

나. 보고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으로는 의뢰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화해한 경우가 전형적인 유형이다. 임의로 화해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를 진

4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인 금 1,500,000원과 관련하여 그 전액의 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심이 위 선임비용 금 1,500,000원 중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만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원고와 000 사이의 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그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정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강제조정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 의뢰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이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경우도 문제된 적이 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 경우도 보고 의무나 성실의무 위반이 될 것이다.

다. 설명·조언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받은 사건의 처리방침 및 경과를 알기 쉽게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이해와 양해를 얻어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⁵⁰⁾ 또한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게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설명·조언할 보호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⁵¹⁾

50) 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의 계산을 잘못된 경우, 변호사인 피고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판결정본을 교부하면서 항소할 경우 패소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일실수입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나 조언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도 항소권 소멸 후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항소를 통하여 그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할 의무위반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관해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적의 법적 이론을 구성해야 하고, 최선의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해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⁵²⁾ 부동산경매신청에서 채권액(담보채권목록이나 채권계산서)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많은데,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실수가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배당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
- 51) 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관계 및 사고수표와 관련된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의 기대와 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비록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수표 소지인이 당해 수표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생기므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승소 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매우 실효성이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임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52) 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 계속중인 그 수임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소송의 상대방 9인 중의 1인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대리인의 권한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그 담보제공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해 둔 사안에서, 소송의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제2장 직무분쟁의 해결

제1절 분쟁해결에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그 전문 분야에서 자신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완벽한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아주 잘 해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작성해 온 위임계약서라면 당사자를 나무랄 정도의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변호사 업무는 사건의 전개에 따라 발전되는 것이고 당초 계약에서 전부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법률가로서는 매우 부실한 계약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변호사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 상담을 받을 경우 당사자가 처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해야 하고, 싸우거나 타협하는 경우에도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장담하고 수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당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양보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이제 드문 일도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일도 아니다. 의뢰인에 따라서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의뢰인으로부터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냉정함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2절 연락과 설명부족이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

1. 연락과 보고의 중요성

기일이 지정된 경우 기일을 의뢰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는 흔히 사건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처리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뢰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주거나 연락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뢰인은 기일이 지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해야 할지도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의뢰인의 불만 중에는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자신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많다. 특히 의뢰인이 수인일 경우 일부에게만 알리거나 친척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을 경우 또는 사건 소개인에게만 알린 경우에 흔히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연락을 누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책임이다. 사건의 진행사항 보고는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지속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안이하게 대응 보고하지 말고 관련된 의뢰인 전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직원으로 하여금 알리게 하지 말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은 신뢰관계 지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일뿐만 아니라 진행상 중요한 사항도 의뢰인 전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의뢰인의 가장 큰 불만은 설명부족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조심스러울지도 모른다. 변호사 자신은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뢰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은 의문을 남긴 채 돌아가게 되고, 이때 착오

가 반복되어 증폭된다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늘 의식해야 하고, 또한 의뢰인에게 잘 이해할 만한 설명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률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설명한다면 의뢰인에게는 그 뜻이 통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불만해소는 잘 듣는 것이 중요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만이 드러난 경우, 우선 그 주장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인이 불만을 드러낼 단계가 되면 의뢰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들어 보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는 “설명해 주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은 분쟁을 확대시키기만 할 것이다. 물론 의뢰인이 전혀 사리에 부당한 생트집을 잡는 경우에는 필요한 반론을 펼칠 필요가 있지만, 최초의 불만 단계에서는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정중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이 납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개인적 분쟁에 관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사건처리 자세와 태도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뢰인은 불안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이는 인간의 심리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심리를 전제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의뢰인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 금전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

1. 의뢰인의 수탁금은 따로 보관해야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금전문제는 변호사의 인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수탁금을 잘못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윤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중에는 의뢰인별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변호사의 예금과 의뢰인의 수탁금을 같은 계좌에 넣어 두는 방법은 혼란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칫 ‘횡령’이라고 비난받을 때 변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설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2. 보수와 비용의 산출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변호사가 의뢰인과 보수약정을 할 경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보수와 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액수를 산출하게 된 이유와 근거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등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비용납부명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경험에 비추어 어느 정도 액수가 소요될 것인지 미리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의뢰인이 이해하지 못할 감정비가 소요된다면 의뢰인의 불신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가능한 정확히 계산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3. 수탁금은 제때 정산해야

회수한 공탁금이나 대리료 수령한 판결금 등 위임사무 도중 수탁금이 발생하는 일은 흔히 있다. 이와 같은 수탁금을 보수의 담보로 간주해서 위임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보석보증금을 회수할 경우 형사사건 보수의 담보로 생각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건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경우 다른 사건의 수탁금과 정리하지 않은 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의뢰인과의 분쟁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의뢰인의 수탁금은 의뢰인의 요구가 있으면 정산해야 하며, 보수의 담보로서 유치하여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받지 못하고 있거나 받을 보수가 얼마인지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소액의 보수 때문에 수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사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금전문제로 표면화되는 분쟁은 대부분 실제로는 사무처리에 대한 불만이다. 변호사로서는 정당한 보수임에도 의뢰인이 불만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해 다시 충분한 설명을 하면 금전문제에 관한 분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에 대한 설명부족이 금전문제에 관한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충분한 설명이 의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4절 업무상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

1. 솔직히 사정을 설명하라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실수를 한 경우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거나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에서 불출석하게 되거나 수임사무의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면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와 같이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

에도 솔직히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허위 보고를 하지 말라

의뢰인과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 중에는 사후 처리를 잘못된 경우가 많다. 허위 보고는 최악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사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중에 의뢰인의 재촉을 받을 때 아직 하지도 않은 소제기나 신청을 하였다고 허위 보고하는 경우이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님에도 의뢰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나중에는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3. 과잉 배상은 자제하라

변호사의 실수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 실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 금전배상을 생각하여 착수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생각할 경우나 징계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의뢰인에게 과잉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계쟁금액의 전액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과잉 양보는 분쟁해결에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제5절 상대방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1. 의뢰인에게 보고하라

수임사건의 상대방이 변호사를 상대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분쟁은 수임업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

부터 항의 등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의뢰인에게 보고하여 의뢰받은 사건처리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이 변호사와 분쟁을 개시할 경우 대부분은 원래의 분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넓은 의미에서의 공격방어 방법으로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행해지는 것이 그 실상이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에서 의뢰인에게 숨기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의무(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뢰인에게 숨기고 별도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나중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정을 봐 주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 없는 불신이나 비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2.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대처하라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는 거의 생트집이라고 할 만한 것이어서 대응할 필요조차 없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3. 허위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

비록 상대방이 변호사를 상대로 분쟁을 야기하였을 때 자신의 의뢰인과 협의를 하더라도 그 대응방법이 과도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생각이 잘못임을 지적하고 이를 회피시킬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아무리 의뢰인이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변호사법상 의무이고,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다. 예컨대 허위내용의 법정 진술을 하려고 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려 해도 응하지 않아 의뢰인의 요구대로 허위 내용의 신문을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의뢰인이 끝까지 잘못된 방법을 고집한다면 사임하는 수밖에 없다.

4. 모르고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경우 정직하게 말하라

의뢰인이 변호사가 알 수 없게 허위의 증거를 제공하여 변호사가 그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결과, 위증이나 위조문서행사 등에 가담한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문제되는 경우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된다. 징계위원회도 비밀준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언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면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변호사에게 의뢰하라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를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 것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나 이는 가장 유용한 대응방법이다. 변호사가 과오로 인하여 징계청구를 당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변호사가 평소 ‘곤란한 일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동료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염색집 주인은 자기 옷을 염색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옷은 다른 염색집에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의뢰할 변호사는 변호사 분쟁문제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라면 좋을 것이다.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평소 동료와의 교우관계나 지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변호사직무보험

제1절 변호사책임보험제도

변호사는 타인의 과오로 인한 책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직업이다. 그러나, 변호사 자신도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수임한 사건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당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 계속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책임보험제도이다.

변호사책임보험제도는 2002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도입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보험종목은 ‘변호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수의 변호사만 가입하였으나, 변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변호사법상으로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어 점차 가입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률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 외국 변호사의 내국인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외국 변호사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내 변호사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적은 보험료로 편안한 업무를 보장한다면 이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제2절 변호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경우

현행 변호사법 제58조의 10(구성원의 책임)은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구

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지만, 담당 변호사(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법 제58조의 11 제1항), 이 경우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58조의 12).

제3절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변호사책임보험은 법원의 판결금액,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해금액과 같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전문 조사인 비용,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대위권 보전비용 및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지출된 비용은 보상의 범위에 속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러나,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행한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행위, 전문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보험개시일 또는 소급담보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다만, 소급담보일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개시일로 함), 계약상 가중책임, 변호사에게 지급된 법률수수료 및 비용의 반환청구소송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